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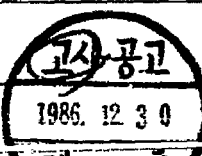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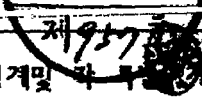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예산10212-346	(전화: 731-6141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	
수신처 보존기간	영 구	4000		
시행일자	86. 12.			
보조 기간 관	기타관리실장 전 결 예산담당관 100 예산총괄처장 30	협 조 기 관	법무국 사무관 출사필	문 서 투 제
기안책임자	유원종			발 송 인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발 신 명 의	 	
제 목	1987년도 세입세출 예산고시			
제 1 안	내부결재			
<p>1. 1987년도 우회시의 일반회계및 각 부문의 세입세출예산및 기          금융용계획을 1986년 12월 29일자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따로붙인 고시안과         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. 고시문 : 따로붙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따로붙임 : 고시안 1부. 끝.</p>				
제 2 안				

수 신 : 공보관(329)

제 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1987년도 우미시의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

운용계획을 1986년 12월 29일자로 구무총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따로붙인 고시

안을 통보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고사본 : 따로붙임

따로붙임 : 고시안 1부. 끝.

제 3 안 (329)

수 신 : 기획담당과

발 신 : 예산담당관

제 목 : 시정개선사항 이첩

1. 국행삼 10212 - 441(86.12.2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'87 예산승인시 구무총리의 우미시정 개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자사하였

으므로 이첩하도록 하시기장 접수 우선 계획에 적극 반영, 우선될수 있도록 각우서에 연락하

여 좋은 결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서울 시정 개선 사항 1부. 끝.

1987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고시

서울특별시 1986년 예산		
담당자	법제국장	법무담당관
홍	정	우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국 특별회계 세입세출

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
고시한다.

1986. 12. 29

서울특별시장

연 번	회 계 별	예 산 액
1	일 반 회 계	1,031,429 백만원
2	특 별 회 계	1,090,509 "
	· 국민주택비특별회계	101,500 "
	·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	41,074 "
	· 유모도포비 "	9,681 "
	· 특정건축물 정비비 "	2,247 "
	· 목동·신정동 개발사업비 특별회계	301,222 "
	· 모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	75,174 "
	· 율림리사업비 "	123,250 "
	· 수도사업비 "	220,680 "
	· 하수처리장 "	88,530 "
	· 병원사업 "	6,570 "
	· 의료보호기금 "	12,076 "
	· 지하철운수사업 "	77,922 "
	· 주차장시설비 "	24,870 "
	· 사용료수수료 통합징수 특별회계	5,475 "
	·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"	238 "
3	기 금 운 용 계 획	
	· 도시재개발 사업기금	64,424 "
	· 재해구호 기금	6,784 "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극행삼 10212 - 44/ (720-2013) 1986. 12. 29.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제목 198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승인

1. 귀시 예산 10212-2910(86.10.31), 예산 10212-3130 (86.12.6) 및 예산 10212-3262(86.12.15)로 승인 요청한 198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네. 건전재정 운용에 단전을 기할 것이며,

2. 향후 서울시정 개선방향을 별지와 같이 지시하네 시행에 따르도록 할 것.

198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승인규모



가. 일반회계 :	1,031,428백만원
나. 특별회계 (15개) :	1,090,509백만원
1)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:	101,500백만원
2)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 :	41,074 "
3) 유료도로비 특별회계 :	9,681 "
4) 특정건축물경리비 특별회계 :	2,247 "
5) 복동·신정등개발사업비 특별회계 :	301,222 "
6)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:	75,174 "
7) 올림픽사업비 특별회계 :	123,250 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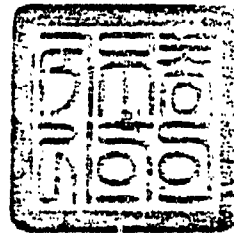
8)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:	220,680	백만원
9)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:	88,530	"
10) 병원사업 특별회계 :	6,570	"
11)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:	12,076	"
12)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:	77,922	"
13)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:	24,870	"
14) 사공로. 수수로통합정수 특별회계 :	5,475	"
15)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:	238	"

다. 기금운용계획

0 도시재개발사업기금 :	64,424	백만원
0 재해구호기금 :	6,784	"

- 첨 부 : 1. 198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심의보고서 1부.  
 2. 수정명세서 1부. 끝.

국 무 영



# 서울市政 改善事項

## 1. 계획성있는 재정운용

중기재정계획을 발전시켜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든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후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며 투자심사 및 기술심사제를 강화하여 투자재원 배분의 적정을 기하고 사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계획·예산 및 평가의 연동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할 것

## 2. 관리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

모든 사업의 시행이나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가시적이고 양적인 확대 발전위주의 시책을 지양하고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정 수행이 되도록 할 것

## 3. 공공시설물의 과학적인 유지관리

- 도로, 교량, 산, 하수, 공원, 녹지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유지·관리에 역점을 두어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할 것
-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기에 완벽한 보수를 하여 위해의 사전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

## 4. 주택가 및 학교주변정화 적극 추진

시민의 정신보건을 해치는 불망, 유해, 퇴폐업소 등은 생활환경정화의 차원에서 엄단해 나가도록 하되 관계기관과 협조,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대하여는 청소년 선도시책과 병행하여 유해 퇴폐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할 것

#### 5.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철저

87년에 완공되는 4개하수처리장의 완벽한 가동과 차질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기술과 유지관리기법을 완전 습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안양·난지하수처리장의 1차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정화조오니처리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할것.

#### 6. 청소행정종합대책 수립·시행

쓰레기의 수거, 재활용, 처리에 이르기까지 청소행정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것.

#### 7. 도심주차시설 확충기본계획수립

서울특별시내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심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도심교통량·교통영향평가, 도시미관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한후 서울시 주차 시설확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것.

#### 8. 한강시민공원 관리개선방안 강구

한강시민공원에 조성된 잔디공원에 대하여는 그수부기상 간디식재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기존시설이나 향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할것.

#### 9. 산하사업소운영의 내실화

서울시 57개 산하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설치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합리화방안을 강구·시행하도록 할 것.

10. 투자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철저

서울시에서 출자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등 4개 시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력할 것

11. 모든사업의 적기 집행

모든 사업은 적기에 착수하고 공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, 연말에 이월을 전제로 하는 계약체결은 지양하도록 할 것